

음악대학 교수회 내규

시행일 : 2011.9.26.

제1조(목적)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교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수회 종류) 음악대학에 전체교수회와 각 학과 교수회를 둔다.

제3조(교수회 구성) ① 전체교수회는 음악대학 소속 전임교수로 구성하고 학과 교수회는 학과 소속 전임교수로 구성한다.

②전체교수회 의장은 학장이 되고, 학과 교수회 의장은 각 학과장이 된다.

제4조(전체교수회의 기능) 전체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
2. 학사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3. 학생의 지도 및 시험에 관한 사항
4. 학장이 부의하는 사항
5. 음악대학 소관 각 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
6. 음악대학 관련 규정의 제정·개정·폐지에 관한 사항
7. 기타 음악대학의 중요한 사안으로서 구성원이 제안하는 사항

제5조(전체교수회의 운영) ①전체교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정기회의는 학기 초에 년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임시회의는 학장 또는 재직교수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장이 소집한다

④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는 의장이 주재한다. 필요한 경우 의장이 지명한 학과장이 맡을 수 있다.

⑤전체교수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간사) ① 전체교수회의 간사는 음악대학 행정실장이 된다.

②간사는 의장의 지시를 받아 전체교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.

제7조(학과교수회의 기능) 학과교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각 학과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2. 타 학과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
3. 기타 구성원이 제안하는 사항

제8조(학과교수회의 운영) ①학과교수회는 필요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학과 교수회는 각 학과장이 주재한다.

③학과 교수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④회의의 결과는 당해 회의에 출석한 각 구성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학장에게 보고함으로써 확정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내규는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